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16
----------	-------

발의연월일 : 2022. 4. 6.

발 의 자 : 김예지 · 엄태영 · 김미애
김승수 · 이주환 · 이종성
추경호 · 김선교 · 김용판
박완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회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의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신체장애인의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회장을 활용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회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패럴림픽 휘장 사업) ①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문양을 말한다)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55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패럴림픽 휘장 사업)</u> ① <u>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문양을 말한다)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u>
제5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⑤ (생략)	제5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 ----- -----. ④·⑤ (현행과 같음)